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9. 2. .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치구에 위임되는 사무 중 위임사무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다소 부정확하게 기술된 부분과 입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해야 하는 부분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정기간행물 잠지등록 및 관리에 관한 위임 사무 중 “청문의 실시”를 추가하고, 일부 불명확한 위임사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함(안 별표 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란 제3호).
- 나. 사망사업에 관한 위임 사무 중 “사망사업의 설계·시공”과 “사망사업의 타당성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근거 법령 기술에 통일을 기함(안 별표 푸른도시국 소관 자연생태과란 제4호).
- 다.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위임 사무 중 근거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사목”의 “법인의 합병인가”부터 “하목”의 “보고·서류 제출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까지의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입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별표 도시교통본부 소관 운수물류담당관란 제17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수정안 대비표(별첨)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예술과	3.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마. 영업의 승계신고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 아. 직권취소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차. 청문의 실시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5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8조 ○ 같은법 제21조 ○ 같은법 제22조 ○ 같은법 제23조 ○ 같은법 제24조 ○ 같은법 제25조 ○ 같은법 제26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33조	구청장

안 별표 푸른도시국 소관 자연생태과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연생태과	4. 사망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망사업의 시행(산림청 소관 제외) 나. 사망사업의 설계·시공 다. 사망사업의 타당성 평가 라. 공무원의 조사행위 등 마. 손실보상 및 보상금 결정 바. 수익의 교부 등 사. 원인자 부담비용 부과 및 징수 아. 사망사업의 공부 비치 및 열람	○ 「사망사업법」 제5조 ○ 같은법 제7조의2 ○ 같은법 제7조의3 ○ 같은법 제9조 ○ 같은법 제10조·제11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	구청장

안 별표 도시교통본부 소관 운수물류담당관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운수물류 담당관	1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가. 등록 나. 등록의 취소 등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마. 사업개선명령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사. 법인의 합병인가 아. 양도·양수의 신고 자. 상속의 신고 차. 청문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휴업·폐업의 신고 하. 보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8조 ○ 같은법 제85조 ○ 같은법 제35조 ○ 같은법 제31조 ○ 같은법 제33조 ○ 같은법 제32조 ○ 같은법 제14조, 제35조 ○ 같은법 제14조, 제35조 ○ 같은법 제15조, 제35조 ○ 같은법 제86조 ○ 같은법 제88조 ○ 같은법 제94조 ○ 같은법 제16조제3항, 제35조 ○ 같은법 제79조	구청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위 입 사 무		수입기관	[별표] 위 입 사 무		수입기관	[별표] 위 입 사 무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푸 른 도 시 국 (자연 생태과)	<신설>	<신설>	푸 른 도 시 국 (자연 생태과)	4.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방사업의 시행 (신협소관 제외) <신설> <신설>	근거법령	푸 른 도 시 국 (자연 생태과)	4.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방사업의 시행 (신협소관 제외) 나.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다. 사방사업의 타감정 평가 라. 공무원의 조야행위 등	근거법령
푸 른 도 시 국 (자연 생태과)	<신설>	<신설>	푸 른 도 시 국 (자연 생태과)	나. 공무원의 조사행위 등 다. 손실보상 및 보상금 징수 라. 수익의 교부 등	근거법령	푸 른 도 시 국 (자연 생태과)	나. 손실보상 및 보상금 징수 다. 수익의 교부 등	근거법령 제10조·제11조
푸 른 도 시 국 (자연 생태과)	<신설>	<신설>	푸 른 도 시 국 (자연 생태과)	마. 원인가 부담비용 부과 및 징수 바. 사방사업의 공무원 배치	근거법령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푸 른 도 시 국 (자연 생태과)	마. 원인가 부담비용 부과 및 징수 바. 사방사업의 공무원 배치 및 열람	근거법령 제13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제15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그가 직접”을 “시장이 직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제4조 중 “사전승인을 얻거나”를 “사전승인을 받거나”로 한다.

별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보건정책담당관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정책 담당관	10.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변경허가 다. 변경신고 라. 휴·폐업, 재개업신고 마. 지위승계 신고 바. 과태료 부과·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같은법 제51조제3항 ○ 같은법 제51조제4항 ○ 같은법 제53조 ○ 같은법 제54조 ○ 같은법 제62조제2항	구청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맑은환경본부 소관 에너지정책담당관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에너지정책 담당관	5.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라.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제1항 ○ 같은법 제37조 및 제38조 ○ 같은법 제40조제4항 ○ 같은법 제66조제1항 ○ 같은법 제78조제3항제9호 ○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8조제3항제12호 ○ 같은법 제75조	구청장

별표 맑은환경본부 소관 환경행정담당관란 제2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행정 담당관	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가. ~ 바. (생략) 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아. 청문의 실시 자. 과태료 부과·징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현행과 같음) ○ 같은법 제31조 ○ 같은법 제57조 ○ 같은법 제66조	구청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문화예술과	3.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마. 영업의 승계신고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 아. 직권취소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차. 청문의 실시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8조 ○ 같은법 제21조 ○ 같은법 제22조 ○ 같은법 제23조 ○ 같은법 제24조 ○ 같은법 제25조 ○ 같은법 제26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33조	구청장

별표 푸른도시국 소관 자연생태과관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자연생태과	4. 사망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망사업의 시행(산림청 소관 제외) 나. 사망사업의 설계·시공 다. 사망사업의 타당성 평가 라. 공무원의 조사행위 등 마. 손실보상 및 보상금 결정 바. 수익의 교부 등 사. 원인자 부담비용 부과 및 징수 아. 사망사업의 공부 비치 및 열람	○ 「사망사업법」 제5조 ○ 같은법 제7조의2 ○ 같은법 제7조의3 ○ 같은법 제9조 ○ 같은법 제10조·제11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	구청장
	5.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 나. 지정서 교부 다. 지정 취소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구청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 도시교통본부 소관 운수물류담당관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운수물류 담당관	1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 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가. 등록 나. 등록의 취소 등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마. 사업개선명령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사. 법인의 합병인가 아. 양도·양수의 신고 자. 상속의 신고 차. 청문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휴업·폐업의 신고 하. 보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 같은법 제85조 ○ 같은법 제35조 ○ 같은법 제31조 ○ 같은법 제33조 ○ 같은법 제32조 ○ 같은법 제14조, 제35조 ○ 같은법 제14조, 제35조 ○ 같은법 제15조, 제35조 ○ 같은법 제86조 ○ 같은법 제88조 ○ 같은법 제94조 ○ 같은법 제16조제3항, 제35조 ○ 같은법 제79조	구청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 ----- ----- ----- ----- ----- ----- -----</p>
<p>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u>그가 직접</u>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u>필요한 예산</u>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 ----- ----- ----- ----- ----- ----- ----- ② ----- ----- <u>예산</u>----- -----</p>
<p>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u>사전승인을 얻거나</u>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p>	<p>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 ----- ----- <u>사전승인을 받거나</u> ----- -----</p>

현행				개정안			
[별표] 위 입 사무				[별표] 위 입 사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여성가족 정책관 (보건정책 담당관)	<신설>	<신설>	<신설>	여성가족 정책관 (보건정책 담당관)	10. 용급원자 이송업에 관 한 다음의 사무 가. 용급원자 이송업 허가 나. 변경허가 다. 변경신고 라. 휴·폐업 재개업신고 마. 지위승계 신고 바. 과태료 부과·징수	○ 당급원자 이송업 법 제13조제1항 ○ 같은법 제13조제2항 ○ 같은법 제13조제3항 ○ 같은법 제13조제4항 ○ 같은법 제13조제5항	구청장
맑은환경 본부 (에너지정 책담당관)	5. 에너지이용합리화 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에너지관리대 상자의 에너지 지사용량 신고 사항 나. 특정열사용기 자재 시공업 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 다. 에너지관리 대 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라. 검사대상기기 종류자의 선입기 한 연기 승인 마.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의 부과·징수 (1) 제25조제1항·제 58조제7항,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의 신고를 한 자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 같은법 제56조 ○ 같은법 제59 조제4항 ○ 같은법 제59 조제1항 ○ 같은법 제100 조제3항 제 9호	구청장	맑은환경 본부 (에너지정 책담당관)	5.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 한 다음의 사무 가. 에너지다소비사업 자의 신고 등 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 업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 다. 검사대상기기종 류자의 선입 자의 선입 라.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 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한 벌칙 및 과태료 의 부과·징수 (1) 제31조제1항·제39 조제7항,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신고 를 한 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1조제1항 ○ 같은법 제37조 및 제38조 ○ 같은법 제40조제1항 ○ 같은법 제46조제1항 ○ 같은법 제46조제2항 ○ 같은법 제46조제3항제1호	구청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별표】 위 입 사 무				【별표】 위 입 사 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맑은환경 본부 (에너지정책 책임담당관)	(2)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 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검사대상기 기종종자를 선입하 지 아니한 자	○ 같은법 제100 조제3항 제 14호 ○ 같은법 제100 조제3항 제 96호	구청장		(2)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3) 제90조제1항부터 제 4항에 위반하여 검 사대상기기종종자를 선입하지 아니한 자	○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제3항제2호 ○ 같은법 제75조	구청장
맑은환경 본부 (환경행정 담당관)	2. 건설폐기물처리 업에 관한 다음 의 사무(수집· 운반업에 한함) 가.~바. (생략) 〈신설〉	○ 생략 〈신설〉	구청장 〈신설〉	맑은환경본부 (환경행정 담당관)	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바. (현행과 같음) 사 권리·의의승계 신고 아. 정문의 실시 자. 폐타로 부과·징수	「건설폐기물의 계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현행과 같음) ○ 같은법 제31조 ○ 같은법 제57조 ○ 같은법 제65조	구청장
문화국 (문화 예술과)	〈신설〉	〈신설〉	〈신설〉	문화국 (문화 예술과)	3. 경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 「잡지 등 경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8조 ○ 같은법 제21조	구청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문화국 (문화예술과)	<신설>	<신설>	<신설>	문화국 (문화예술과)	마. <u>양질의 승계신고</u> 바. <u>좌초간행물의 제출</u> 사. <u>경간행물의 발행권지명령 등</u> 아. <u>적권취소</u> 자. <u>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u> 차. <u>경문의 실시</u> 카. <u>과태료 부과 및 징수</u>	○ 같은법 제22조 ○ 같은법 제23조 ○ 같은법 제24조 ○ 같은법 제25조 ○ 같은법 제26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33조	구청장
푸른 도시국 (자연생태과)	<신설>	<신설>	<신설>	푸른 도시국 (자연생태과)	4. <u>사방사업에 관한 다음</u> 가. <u>사방사업의 시행산립청 소관 제외</u> 나. <u>사방사업의 설계·시공</u> 다. <u>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u> 라. <u>공무원의 조사행위 등</u> 마. <u>손실보상 및 보상금 결정</u> 바. <u>수익의 교부 등</u> 사. <u>원인자 부담비용 부과 및 징수</u> 아. <u>사방사업의 공부비치 및 열단</u>	○ 「사방사업법」 제3조 ○ 같은법 제7조의2 ○ 같은법 제7조의3 ○ 같은법 제8조 ○ 같은법 제10조·제11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	구청장
	<신설>	<신설>	<신설>		5. <u>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가관 지정에 관한 다음</u> 가. <u>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가관 지정 등</u> 나. <u>지정서 교부</u> 다. <u>지정 취소</u>	○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13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구청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1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1,000대 미만업체) 가. 등록 나. 등록의 취소 다.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 라. 자동차대여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마. 사업개선명령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사. 법인의 합병인가 아.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 자. 사망시 상속 신고의 수리 차. 청문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의 수리 하. 보고·서류 제출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 같은법 제76조 ○ 같은법 제11조제2항, 제36조 ○ 같은법 제32조 ○ 같은법 제34조 ○ 같은법 제38조 ○ 같은법 제15조제36조 ○ 같은법 제16조제36조 ○ 같은법 제77조 ○ 같은법 제79조 ○ 같은법 제85조 ○ 같은법 제17조제1항, 제36조 ○ 같은법 제71조	구청장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1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현행과 같음) 나. 등록의 취소 등 (현행과 같음) 라. 자동차대여약관의 신고 등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양도양수의 신고 자. 상속의 신고 차. 청문 카. (현행과 같음) 타. (현행과 같음) 파. 휴업·폐업의 신고 하. 보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 같은법 제5조 ○ 같은법 제5조 ○ 같은법 제11조 ○ 같은법 제83조 ○ 같은법 제82조 ○ 같은법 제14조제35조 ○ 같은법 제14조제35조 ○ 같은법 제55조제35조 ○ 같은법 제66조 ○ 같은법 제88조 ○ 같은법 제14조제35조 ○ 같은법 제79조	구청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